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1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김동아·박홍배·임오경

황정아 • 이건태 • 김문수

김성환 · 김준혁 · 이정문

이병진 • 박정현 • 정을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압수·수색을 할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.

그런데 오늘날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·수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요건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, 현행법은 전자정보의 압수·수색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·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.

이에 전자정보를 압수·수색하는 경우에는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고, 전자정보매체등의 관리자가 압수·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보 압수·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,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압수·수색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(이하 이 항에서 "정보저장매체등"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정하거나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하는 등 기억된 정보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한다. 다만, 기술적인 이유로 선별 추출을 통한 출력 또는 복제가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.
- ④ 정보저장매체등의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선별 추출, 복제 등에 참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저장매체등의 관리자에 대한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第106條(押收) ① ・ ② (생 략)

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(이하 이 항에서 "정보저장매체등"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. 다만,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수있다.

<신 설>

第106條(押收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 퓨터용디스크,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정보저장매체(이하 이 항 에서 "정보저장매체등"이라 한 다)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정 하거나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 하는 등 기억된 정보를 선별하 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출력하 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 다. 다만, 기술적인 이유로 선 별 추출을 통한 출력 또는 복 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 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. ④ 정보저장매체등의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선별 추 출, 복제 등에 참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저장매체등의 관 리자에 대한 통지 등에 관하여 는 제122조를 준용한다.

<u>④</u> (생 략)

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